

㉠ 2015년 서울시 9급 세무직 회계학 해설 담당 : 허 홍 석

[총평]

2015년도 서울시 9급 공무원 세무직 회계학 시험문제는 과거 5지선다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변화된 첫 번째 시험이었다. 출제 문제는 회계원리 수준에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출제범위도 전체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출제되었다. 계산형 문제가 14문제, 이론형 문제가 6문제로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하게 고득점(90점 이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좁은 지면에 설명형식의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시간 안배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각 단원별 출제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 (1) 회계의 기초 : 2문제
- (2) 자산회계 : 6문제
- (3) 부채회계 : 2문제
- (4) 자본회계 : 1문제
- (5) 수익·비용 : 2문제
- (6) 재무제표 : 2문제
- (7) 원가회계 : 4문제
- (8) 정부회계 : 1문제

자세한 내용은 문항별 분석과 해설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항별 분석과 해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뿐 아니라,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문항별 분석과 해설]

1. ① 자산회계 - 금융자산(2) - 매도가능금융자산 :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취득원가-공정가치
 $(₩13,000 - ₩12,000) \times 10\text{주} = \text{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10,000$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기초장부금액-공정가치
 $(15,000 - 12,000) \times 10\text{주} = \text{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30,000$
2. ④ 자산회계 - 재고자산 - 매출총이익률법 : 중
 - (1) 화재직전까지의 매출원가
 $(2,150,000 - 150,000 - 200,000) \times (1 - 0.25) = ₩1,350,000$
 - (2) 2월 1일의 재고자산 추정액
 $(400,000 + 1,600,000 - 200,000 - 100,000) - 1,350,000 = ₩350,000$
 - (3) 화재손실 추정액
 $350,000 - 100,000 = ₩250,000$

현금기준 순이익	₩50,000
매출채권 증가액	(+) 7,000
재고자산 감소액	(-) 6,000
매입채무 증가액	(-) 9,000
발생기준 순이익	₩42,000

(1) 양도거래 : (차) 현	금	×××	(대) 받	을	어	음	×××
	매출채권처분손실	×××					
(2) 담보차입 : (차) 현	금	×××	(대) 단기차입금	×	×	×	
	이	자	비	용	×	×	×

기초 매출채권	25억	기초 선수금	20억
당기 매출액	?	현금 수입액	160억
기말 선수금	50억	기말 매출채권	40억
	<u>220억</u>		<u>220억</u>

(1) 제품보증비용 : $100,000 \times 0.1 = \text{₩}10,000$
 (2) 제품보증충당부채 : $10,000 - 7,000 = \text{₩}3,000$

9. ③ 재무제표 - 재무제표비율분석 - 안전성비율 : 중
 재고자산 증가(상품), 당좌자산 감소(받을어음), 유동부채 증가(지급어음)
 (1) 유동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비율은 감소한다.
 (2) 당좌자산이 감소하고 유동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좌비율은 감소한다.

10. ④ 자본회계 - 자본의 기초개념 - 자본잉여금 : 하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5억+ 감자차익 ₩3억+ 자기주식처분이익 ₩3억
 = ₩11억

11. ① 자산회계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손상 : 상
 원가모형의 경우, 손상회복으로 인한 장부금액의 한도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20×2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 ₩420억이 아니라 ₩400억이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의 장부금액

$$₩500억 - \left\{ \frac{(500억 - 0)}{10년} \times 2년 \right\} = ₩400억$$

12. ④ 회계의 기초 -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 회계방정식 : 상
 (1) 기초자본 : 3,000-1,800=₩1,200
 (2) 기말자본 : 1,200+ (2,000-1,700)-50-30=₩1,420
 *주식배당은 자본총액에 변동이 없으며, 유상감자로 자본총액이 감소하는 금액은 현금지급액 ₩30이다.
 (3) 기말 자산 = 기말부채+ 기말자본

$$1,900 + 1,420 = ₩3,320$$

13. ② 재무제표 - 현금흐름표 - 간접법

당기순이익	₩200,000
매출채권 증가액	(-) 110,000
선급보험료 감소액	(+) 35,000
매입채무 증가액	(+) 120,000
건물처분손실	(+) 150,000
감가상각비	(+) 450,000
기계장치처분이익	(-) 60,000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u>₩785,000</u>

14. ② 자산회계 - 무형자산 - 영업권 : 하
 합병대가-순산공정가치 = 영업권

$$4,500,000 - (35,000,000 - 32,000,000) = ₩1,500,000$$

15. ③ 부채회계 - 사채 - 사채의 매입상환 : 상
- (1) 사채의 발행가액 : $(1,000,000 \times 0.630) + (50,000 \times 4.623) = \text{₩}861,150$
- (2) 2015년 6월 30일 장부금액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 $(861,150 \times 0.08) - (1,000,000 \times 0.1 \times 6/12) = \text{₩}18,892$
- 사채의 장부금액 : $861,150 + 18,892 = \text{₩}880,042$
- (3) 사채상환손실 : $900,000 - 880,042 = \text{₩}19,958$
16. ② 원가회계 - 종합원가계산 - 기말재공품평가
- 종합원가계산에서 기말재공품평가하는 경우, 완성품환산량 단위원가의 계산은 선입 선출법은 당기투입원가로 계산하고,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투입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7. ③ 원가회계 - 원가의 기초 - 원가의 추정 : 중
- (1) 단위당 변동원가 : $(\text{₩}60,000,000 - \text{₩}50,000,000) \div (3,000\text{개} - 2,000\text{개}) = \text{₩}10,000$
- 고정원가 : $\text{₩}50,000,000 - (2,000\text{개} \times \text{₩}10,000) = \text{₩}30,000,000$
- (2) 2015년도 : 고정원가 $\text{₩}30,000,000 \times (1 + 0.1) = \text{₩}33,000,000$
- 단위당 변동원가 : $\text{₩}10,000 \times (1 - 0.2) = \text{₩}8,000$
- 총제조원가 : $(4,000\text{개} \times \text{₩}8,000) + \text{₩}33,000,000 = \text{₩}65,000,000$
18. ③ 원가회계 -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 활동기준원가계산 : 하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은 다품종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단위별로 집계하여 활동단위별 원가동인에 의하여 원가대상에 배부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정확한 원가계산과 원가의 세부적인 통제가 가능한 원가계산방법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정보의 정확성은 기대할 수 있지만, 신속한 재무제표작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19. ③ 원가회계 -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 예정배부법 : 중
- (1) 예정배부율 : $\text{₩}200,000 \div 100,000\text{시간} = \text{₩}2$
- (2) 예정배부액 : $80,000\text{시간} \times \text{₩}2 = \text{₩}160,000$
- (3) 실제제조간접원가 : $\text{₩}160,000 + \text{₩}20,000 = \text{₩}180,000$ (실제제조간접원가)
- *과소배부차이 : 예정원가 < 실제원가
20. ① 정부회계 -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비교 : 중
- 재무제표작성원칙 중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명시하지 않은 규정이다.

*재무제표작성원칙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①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u>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u>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장에 따른 출납정리기한 중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입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3.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 후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반납된 것으로 본다.	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개정 2011.5.20][[시행일 2012.1.1]]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개정 2011.5.20][[시행일 2012.1.1]]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신설 2011.5.20][[시행일 2012.1.1]] 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5.20][[시행일 2012.1.1]] ⑤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개정 2011.5.20][[시행일 2012.1.1]]
--	---